# 200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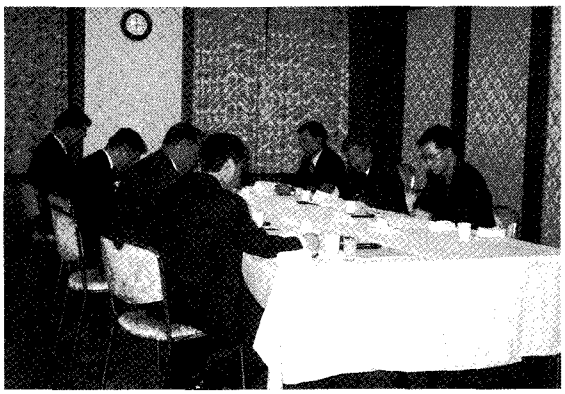

본 협회는 지난 1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2000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회의 이사 11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 회의에서는 199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원가입 및 탈퇴승인의 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승인의 건, 제 규정 중 개정(안), 회원규정 개정(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임원 선임 및 연임에 관해서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 2000년 정기총회 및 공정거래 강연회 개최

본 협회는 2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1999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및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안과 회비금액의 일부 인상조정 및 세분화를 위한 회원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특히, 총회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2000년 공정위의 주요업무계

획과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김병일 사무처장은 2000년 공정위 업무계획에서 상호채무보증의 해소와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를 통한 핵심역량의 집중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2000년 주요업무계획은 본 지의 FOCUS(51면)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연회에서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프랜차이즈 사업자인데 공정위에 제소 중에 본사에서 물품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8개월이 되도록 해결이 나지 않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경우 공정위가 심사에서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 줄 수는 없는가와 금번 업무계획 중에서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정계획에 대해 알고 싶다.

**A** 신고 후 처리과정에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사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워낙 신고 건수가 많은 반면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위원들 간의 판단 차이로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사건은 사례별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one-stop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빠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표준약관을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Q**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있어 특정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최대 출자자인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공동출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가? 그리고 2001. 4. 1 시행 한도초과분이 100억인 경우 이를 전액 해소전까지 신규출자는 불가능한 것인가? 또 2002년에 해소할 계획이라면 유예기간동안에는 신규출자가 가능한가?

**A** 국내기업과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공동출자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는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이라면 국내기업이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부당지원행위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 출자하는 경우에 우리 기업과 같은 지분율 출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의 신규출자는 불가능하다.

**Q**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규정에 관하여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물출자에 대해서만 예외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영업권과 종업원은 통합하면서 양사가 현금출자를 하고 자산은 임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금출자에 대한 예외인정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A** 현물출자가 대부분이라 현물출자만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에 건의해주기 바란다.

**Q**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공정위 심결사례집도 이미 법위반으로 확정된 사례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러므로 공정위에 접수된 사례 중에 무혐의 처리된 사례들도 공개가 되었으면 한다.

△ 무혐의 사례도 공개토록 하겠다. 또한 사전상담제도를 발전시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여 법집행에까지 반영되도록 하고, 상담내용 중 모범이 될만한 사례는 공개하도록 하겠다.

Q 관청의 행정지도가 결국 카르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지도와 카르텔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공정위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지도와 카르텔을 구분하고 있다. 구두 등을 통한 음성적인 행정지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맥주제조 3사에 대하여 맥주가격을 10% 이상 올리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맥주제조 3사가 담합하여 똑같은 비율로 가격을 인상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Q 공정위 홈페이지의 update가 늦다.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제도 등을 확대하여 기업을 위한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각 기업의 자율준수편람 매뉴얼 작성에도 도움을 주기 바란다. 전문상담인을 두어 정보의 보완을 통해 법준수에 업체가 앞장설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 홈페이지의 신속한 update와 사전상담기능을 확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Q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규정에 있어, 예컨대 기존에 출자되었던 계열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청산된다거나 분할합병에 의해 주식이 다른 계열사로 넘어가는 경우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식이 양도되는 때에도 적용되는가? 그리고 외국인 지분 중 기존에 출자한 지분도 해당되는가?

△ 예외인정이 가능한 '불가피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란 첫째, 친족독립경영으로 계열분리과정에서 지분교환을 통해 출자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자기영위업종과 관련업종의 회사의 주식은 취득함으로써 출자가 증가하는 경우 5년간 예외가 인정된다. 이는 핵심역량 집중의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둘째, 자기의 계열사, 비계열사임을 불문하고 회사가 부실화하여 매각해야 할 경우 매각에 앞서 유상증자가 필요하면 자기자본비율대로 공평하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의 신주 인수시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의 기존 출자지분은 예외가 인정된다.

Q 공정거래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법 자체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시나 참고자료 등도 부족하다.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일반 기업에서의 실무 적용이 어려운데, 애매한 사례이더라도 이에 대한 공정위의 내부적인 기준이나 사례가 있을 것이니 이를 공개했으면 한다.

△ 가능하면 공정위의 내부지침도 공개토록 하겠다.

# 공정거래법 심결 해설 및 평석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2000년 2월 16일 공정거래법 심결 해설 및 평석집(판매가격 18,000원)을 발간하였다.

1996년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공정거래법 심결 해설 및 평석집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총 7,422건에 달하는 공정거래 관련 심결사례 가운데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를 100건 선정하여 사건배경과 위법성 판단기준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해설과 평석을 게재하였다.

이번 해설·평석집은 본 협회에서 199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학술용역을 의뢰받아 전남대 신창선 교수, 연세대 신현윤 교수, 안동대 이기종 교수 등의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공정거래법 심결 해설 및 평석집의 전편에는 심결의 해설과 평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쉽게 풀이하였다.

「공정거래법 심결 해설 및 평석」,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1999년 6월 25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각종 공정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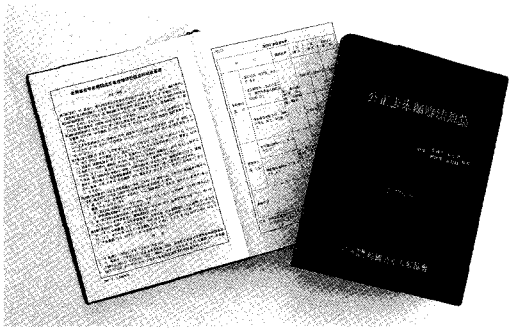

1997년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9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약관법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이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어 오던 과징금부과세부기준에관한고시와 각 분야별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되어진 방문판매법과 할부판매법, 그리고 1999년 2월 5일에 공포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도록 하였다.

동 공정거래법규집의 가격은 2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 · 지침 등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2) 기업결합의신고요령
   3) 기업결합심사기준
   4) 지주회사의범위에관한심사요령
   5)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보고에관한요령
   6)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기준
   7)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8)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9)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0)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1)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2)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관한지침
   13)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14) 대규모기업집단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심사기준
   15)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16)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17)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18)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19)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21) 경쟁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2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23) 체납가산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24)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25) 공정거래위원회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

**Ⅱ.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 · 지침 등
   1)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2)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3) 선급금등지연이자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
   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5) 하도급자문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6)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7) 과징금부과기준

**Ⅲ. 약관규제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 · 지침 등
   1)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Ⅳ. 표시 · 광고법**

1.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 · 지침 등
   1) 표시 · 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2) 주택광고에관한심사기준
   3) 환경관련표시 · 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4) 상가등의분양및임대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5)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 · 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6) 보험상품표시 · 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7) 수상 · 인증등의표시 · 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8) 표시 · 광고심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9) 통신판매표시 · 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10)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Ⅵ.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Ⅶ.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 관한법률**

**Ⅷ. 공정거래위원회운영**

1. 공정거래위원회직제
2.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3. 공정거래위원회위임전결규정
4.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